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9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정밀검사 횟수를 위해도에 따라 20회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위해 우려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식품 영업자가 종업원에게 실시해야 하는 위생교육 주기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 전화 : 043-719-2168 팩스 : 043-719-2150

○ 전자우편 : namkung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가목 후단 중 “제3호나목1)·2)·4)·5)”를 “제3호나목1)·2)·5)·6)”으로, “다목1)·3)”을 “다목1)·4)”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중 “제27조제1항”을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 제28호서식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0조제1항”을 “제30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경우에는 별표 9”를 “경우(수입식품등이 제29조의2제1

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표 9”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전단 중 “제29조의2제2항”을 “제29조의2제2항(제27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9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포함된 원료·성분에 대한 시험방법을 연구·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료·성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별표 8 제1호다목 중 “매 분기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를 “매년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해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별표 9 제2호다목2)나) 각 세세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항목 또는 횟수에 따라 20회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해당합니다)”를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신고인 제3호 중 “해당합니다)”를 “해당하며, 담당 공

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다목2)나)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별표 10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정밀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9 제2호다목2)나)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소명	영업등록번호	
	우수수입업소 등록번호		
변경내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우수수입업소의 명칭		
	우수수입업소의 소재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명칭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소재지		
	등록식품의 명칭		
	등록식품의 원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배합비율을 포함)		
	등록식품의 제조·가공 공정		
변경사유			
분실사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	우수수입업소 등록증	수수료 28,000원
------	------------	----------------

유의사항

-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	---	----	---	----	---	----	---	--------

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처리부서	
연락처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년 월 일
발 급 번 호		발 급 일 자	년 월 일
수하인 (수입화주)	성 명 연 락 처		
신고인 (구매대행자)	성 명 주 소	상 호 영업등록번호	
송하인	전자상거래 사이트주소		
제 품 명			
총 수 량	(단위 :)	검 사 종 류	
제 품 내 역			
NO.	제 품 명	수량(단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① ~ ④ (생 략)	제4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서 에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을 첨부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 <단서 신설>	⑤ ----- ----- ----- ----- ----- ----- <u>제출해야</u> ----. 다만, 우수수입 업소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u>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u> <u>하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로서</u> <u>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u> <u>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u> <u>한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 변경</u> <u>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u>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6조(영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 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 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7호서 식의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 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	제16조(영업의 등록 등) ① ----- ----- ----- ----- ----- -----

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이수증(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 6. (생략)

② ~ ⑤ (생략)

제21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

---. -----

-----.

1. -----

-----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이수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

신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2. (생략)

3. 교육이수증(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생략)

②·③ (생략)

제26조(영업자의 구분 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차등 관리할 수 있다.

1. 2. (생략)

3. 특별관리영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별표 13 II. 개별기준의

-----.

1. 2. (현행과 같음)

3. -----
-----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이수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영업자의 구분 관리)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가. -----.

제3호나목1)·2)·4)·5),
같은 호 다목1)·3) 및 같
은 Ⅱ. 개별기준의 제8호바
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
아 그 효력이 발생한 날(영
업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날)
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나.·다. (생략)

② (생략)

제29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
화) ① (생략)

②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
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
라 해당 수입식품등이 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
(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
다)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
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

제3호나목1)·2)·5)·6)-

----- 다목1)·4) -----

나.·다.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
화)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

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8호 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신고확인증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발급해야 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자동화된 방식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를 해야 한다.

④ 식 제

⑤ (생 략)

제30조(수입식품등의 검사 등) ① (생 략)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7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9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

----- 별지 제28호서식 또는 별지 제29호서식-----

--.

③ -----

----- 제30조-----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수입식품등의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경우(수입식품등이 제2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표 9-----

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발급해야 ----.
제33조(검사결과 등의 공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 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 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2. (생 략) 3. 제29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 1항에 따른 검사결과 적합한 수입식품등의 검사정보. 이 경 우 그 공개기간은 해당 수입 식품등의 소비기한(소비기한 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 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생 략) 제49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에 관한 검사 업무) (생 략) <신 설>	제33조(검사결과 등의 공개) ①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29조의2제2항(제27조제2항 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경 우에는 제외한다)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에 관한 검사 업무)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포함 된 원료·성분에 대한 시험방법 을 연구·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료·성분으로 보지 아니한다.